

2018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18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45명

| 시험명 (시험일자)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
|----------------------------------|-----|------|------|-------------|-------------------|----------------------|----------------|
|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12.15.) | 합 계 | | | 45 | | | |
| | 연구사 | 환경연구 | 환 경 | 2 | 도 2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미생물학 | |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1 | 도 1 |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 |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1 | 도 1 |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 |
| | 9급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2 | 도 2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 | | 시 설 | 일반토목 | | 26 | 도 8, 제주시 8, 서귀포시 10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 | | 건 축 | | 10 | 도 4, 제주시 6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 | 지 적 | | 3 | 도 1, 제주시 2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2. 시 험 방 법

| 구 분 | 직급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시험 | 4차 시험 |
|---------------------------|------------------|-------------------------|-------|------|-------|
|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 경력경쟁임용 시험 | 연구사 지도사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60분(10:00 ~ 11:00)

-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성별: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 시험구분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 | 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마. 필수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 필기시험 합격자만 관련 서류 제출

| 시험명 | 직급 | 직렬(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비고 |
|----------------------------------|-----|----------------|---|--|
|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12.15.) | 연구사 | 환경연구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최종시험일 (면접시험 일)현재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 |
| | | 보건연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 |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기계) | 일반기계기사 또는 농업기계기사 이상 |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 | 9급 | 해양수산 (선박기관) | 5급 기관사 또는 6급 기관사 이상 | |
| | | 시설 (일반토목)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
| | | 시설 (건축)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 |
| | | 시설 (지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이상 또는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 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학과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을 전공한 사람(석·박사 학위)도 포함됨(대학교에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시험방법 | 원서접수기간 | 원서접수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12. 15.) | 경력 경쟁 | 11. 5.(월) ~11. 7.(수) | 11. 5.(월) ~11. 9.(금) | 필기 시험 | 18.11.30.(금) | 18.12.15.(토) | 19. 1.18.(금) |
| | | | | 면접 시험 | 19. 1.18.(금) | 19. 1.25.(금) | 19. 2. 1.(금) |
|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 | |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 11. 5.(월)~11. 7.(수) ※ 11. 7.(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필기· 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다. 응시수수료: 9급은 5,000원, 연구·지도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 가능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11. 5.~11. 7.)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은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 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5)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 (7) 거주지제한, 연령, 자격,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 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를 입력 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 한어수평고시, JPT, JLPT)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5%, 3%)과 보훈번호 입력
- ※ 자격증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선택과목은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조정전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이면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전 점수와 조정점수 둘 다 4할 미만인 경우만 과락적용)
- (3) 원서접수 시 어학능력 성적을 포함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기관별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의사상자 가점은 가능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1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구 분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
| | 8급·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
| 사무 관리 분야 |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 (舊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구 분 | 연구사, 지도사 | | 일반직 9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자격증: 별도 첨부물 참고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10%범위에서 합산 가산되며, 동일 기술·기능 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3)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 가산비율 |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텡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텡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이상 |

| 가산비율 |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준2급 · 토익(TOEIC) : 775점 이상 · 토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텡스(TEPS) : 700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렉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6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이상 |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 한어수평고시(신HSK)인 경우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점 적용이 됨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4)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3%(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및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함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 예년과 달라지는 사항은 면접시험 미응시자, 등록 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최대 150% 이내)

나.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장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710-6222~6225)로 문의 바람